

# 의 정 부 지 방 법 원

## 제 3 형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20노898 사기  
피 고 인 서복석  
주거  
등록기준지  
항 소 인 검사  
검 사 김△△(기소), 정△△(공판)  
변 호 인 범무법인 가△  
담당변호사 박△△  
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4. 9. 선고 2019고단3029 판결  
판 결 선 고 2021. 4. 23.

### 주 문

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.

### 이 유

1.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(사실오인)

피해자가 박△△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왔을 때,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“내일 7,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게 맞느냐?”라고 물었고, 피고인은 그렇다고 답변하였던 점, 피고인은 박△△이 무자력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, 피고인은 자신이 받는 돈이 피해자의 돈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, 피고인이 6,000만 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박△△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,0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.

## 2. 판단

### 가. 원심의 판단

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① 박△△은 수사과정에서 ‘피고인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’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점, ② 박△△과 고소인이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에게 2,000만 원을 건넨 사람은 박△△이고, “다음 날 1,000만 원을 더해서 7,000만 원을 줄 수 있느냐.”라고 물어본 사람도 박△△인 점, ③ 6,000만 원 수수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인이나 박△△은 6,000만 원을 박△△이 피고인에게 부담하던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, ④ 설령 위 6,000만 원을 출연한 사람이 고소인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 하더라도,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단축된 급부의 이행으로 이해하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.

### 나. 당심의 판단

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  
대, 고소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‘피고인에게 먼저 6,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1,000  
만 원을 더하여 7,000만 원으로 다시 빌려준다.’는 내용의 금전거래를 제안한 사람은  
박△△인 사실(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피고인이 구상하거나 제안한 것이 아니다), 박△  
△과 고소인이 피고인을 찾아간 날 피고인과 고소인은 처음 만났고, 고소인은 피고인  
과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(박□□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 
8~10쪽). 그렇다면 박△△이 고소인에게 뭐라고 설명하였는지, 고소인이 금전거래의  
당사자를 누구로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, 피고인이 고소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  
식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 
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### 3. 결론

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 
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   신○○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판사            김○○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판사            여○○ \_\_\_\_\_